



# 2017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참가규정

## 제1조 용어의 정리

1. "KOFURN 2017"이라함은 2017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을 말한다.
2. "본 회(KFFIC)"라 함은 2017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을 주최하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3. "참가업체"라 함은 KOFURN 2017 참가신청과 아울러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##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

1.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단위부스(9㎡)이며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.
2. 참가신청은 소정의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총 참가비의 50% 이상을 본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2017년 8월 4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
## 제3조 전시장 사용기간

1. 전시장 사용기간은 2017. 8. 30 ~ 9. 03.로 한다.
2. 전시장 개장시간은 매일 10:00~18:00(8시간)로 한다.
3. 준비 및 철거기간 중 전시장 사용할 시간은 08:00~20:00(12시간)까지로 하며,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이 규정하는 소정의 시간외 사용료를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.

## 제4조 부스배정

1. 참가업체는 부스배정을 희망하는 전시관별로 참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부스를 배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본회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서 임의로 부스의 위치,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3. 참가업체는 본 회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일체 전대, 또는 참가업체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.

## 제5조 전시실 관리 및 판매제한

1.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2.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본회는 이의 도난, 화재,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. -전시물품에 대한 보험가입은 참가업체 임의로 한다.
3.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KOFURN 2017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본 회가 판매를 허가한 지역이외의 전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본회는 즉시 전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4.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6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

1. 참가업체는 배정된 부스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 내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.
2. 참가업체는 KOFURN 2017이 종료된 후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비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3차 철거에 따른 비용을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규칙

1.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,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본 회가 지정한 범위 (높이 4m)이상 초과할 수 없다.
2. 전시장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 되어야 하며 본회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층전시는 할 수 없다.

## 제8조 중량제한

1. 참가업체는 전시물품이 S/M당 5톤 이상일 경우 본회와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전시장내에 반입하여야 한다.
2. 중량물의 반입, 반출,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제9조 계약해지

1. 본회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
  - 참가업체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할 때
  - 참가업체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, KOFURN 2017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
2. 위 1의 참가신청 해지 시 참가업체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3.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KOFURN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.
4. 정부방침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본 회의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

## 제10조 전시장내 음향통제, 통로 이벤트 행사금지

1. 영상 및 음향기기는 반드시 외부와의 소리가 차단된 음향실을 설치하거나 개인 감상용 핸드폰/이어폰 등을 비치하여 참가업체의 상담활동과 인접 업체에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2. 과도한 음향방출로 전시장내의 상담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회는 해당부스의 전력차단, 부스폐쇄, 철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본회에 청구하지 못한다.
3. 참가업체는 전시장 통로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.

## 제11조 세부운영요강, 보충규정, 규정의 준수

1. 본회는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요강을 마련하여 참가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.
2. 본회는 필요시 본 규정 외에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본 규정분 아니라 보충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3. 참가업체는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12조 규정의 해석

1.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본 회와 참가 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본 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